

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

제정 2019. 12. 6.

개정 2020. 3. 27.

개정 2020. 11. 12.

개정 2023. 8. 10.

개정 2026. 2. 13.

[총 칙]

제 1 조 (목적)

제 2 조 (정의)

제 3 조 (적용범위)

제 4 조 (신고상담·접수)

제 5 조 (신고의 조사·처리)

제 6 조 (신고의 종결)

제 7 조 (신분비밀보장)

제 8 조 (불이익조치 등의 금지)

제 9 조 (협조자 보호)

제 10 조 (징계 등)

[부 칙]

[총 칙]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윤리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, 처리,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

- ① “위반행위”란 윤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② “신고자”란 제 1 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.
- ③ “협조자”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,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.

제 3 조 (적용범위)

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 및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적용한다.

제 4 조 (신고상담·접수)

- ① 신고는 회사의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이사회 감사위원회지원조직에 하며, 신고를 받은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위원회지원조직은 감사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한다.
- ② 신고 방법은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다.
- ③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신고자의 신고내용 및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신고의 조사·처리)

- ① 감사위원회는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,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

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

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- ② 감사위원회는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임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, 필요한 자료·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, 당해 위반행위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신고의 종결)

- ① 감사위원회는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.
 - 1.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
 - 2.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
 - 3.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 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
 - 4. 그 밖에 신고내용이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,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
- ①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신분비밀보장)

- ①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신고내용의 조사·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 8 조 (불이익조치 등의 금지)

-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위반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, 구제신청을 받은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한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제 2 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,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관계자에게 취하도록 한다.

제 9 조 (협조자 보호)

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, 신분보장, 불이익조치는 제 7 조와 제 8 조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0 조 (징계 등)

회사의 감사위원회 및 대표집행임원은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부 칙]

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[부 칙]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[부 칙]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[부 칙]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3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[부 칙]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6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